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turandot@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재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0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00일

발의자 : 송재천 의원 외 2인

(윤판오 의원, 조미정 의원)

1. 제안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산책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산책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산책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